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총리령 제205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타법개정 제개정이유(접기)

[제정]

◇ 제정이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데이터처의 차장·국장·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3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조사시스템관리과·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소득통계과·경제총조사과·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가계수지동향과·복지통계과·농어업통계과·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빅데이터통계과·마이크로데이터과·인공지능통계혁신과·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행정자료관리과·통계등록부와 및 행정통계과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제20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1) 국가데이터처에 69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10명, 4급 30명, 4급 또는 5급 31명, 5급 155명, 6급 203명, 7급 186명, 8급 57명, 9급 13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2)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7명, 8급 6명, 9급 4명),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1,390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9명, 4급 또는 5급 10명, 5급 92명, 6급 273명, 7급 375명, 8급 481명, 9급 146명), 국가통계연구원에 52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51명)의 정원을 둠.

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1조 및 별표9)

국가데이터처에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및 인공지능통계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총리령제2055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정정)

관보 제21090호(2025.10.01.)에 게재된 총리령제2055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국가데이터처장

관보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정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0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지능정보화팀은 2027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기업통계팀은 2026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동향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1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6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1명)으로 본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5일 이후(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⑦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운전서기 5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전단·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5항 단서,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⑩,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별표 1]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제14조제1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경 인 지 방 통 계 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동 북 지 방 통 계 청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호 남 지 방 통 계 청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 남 지 방 통 계 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충 청 지 방 통 계 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별표 2]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사무소	경 기 도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성남사무소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사무소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경상북도 안 동 시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포항사무소	포 항 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구미사무소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사무소	상 주 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특별 자치도 춘 천 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사무소	원 주 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강릉사무소	강 룡 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사무소	영 월 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전라남도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 군
순천사무소	순 천 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강진사무소	강 진 군	전라남도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보성사무소	보 성 군	전라남도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전주사무소	전북특별 자치도 전 주 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사무소	군 산 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남원사무소	남 원 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 원 시	경상남도 창원시, 합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사무소	진 주 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통영사무소	통 영 시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사무소	김 해 시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사무소	충청남도 홍 성 군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천안사무소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보령사무소	보 령 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서산사무소	서 산 시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청주사무소	충청북도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주사무소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별표 3]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699
정무직 계	1
처장	1
일반직 계	698
고위공무원단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30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5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 주사	203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85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57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9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4]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99
정무직 계	1
처장	1
일반직 계	698
고위공무원단	1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3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5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 주사	206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86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52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9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5]

통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7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 주사	5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 는 공업주사보	7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운전서기 또 는 방호서기	6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6]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1,390
일반직 계	1,390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3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75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81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5
사무운영서기보	11

[별표 7]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20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390
일반직 계	1,390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97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76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56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5
사무운영서기보	11

[별표 8]

국가통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관련)

총계	52
일반직 계	5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51

[별표 9]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가데이터관리본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8년 9월 30일까지

	나급 1명)	
3.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과	2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인공지능통계혁신과	6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비고		
부칙 제2조 ~ 제5조 및 별표1~9 누락사항 추가		

관보내용
◇ 제정이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정사항
◇ 제정이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0. 1.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비고
정부조직법 공포번호 및 시행일자 명시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055호(2025.10.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